

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등록신청 내 용	①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
	②업종	상호	
	③영업소 주소		전화번호
	부지 면적	건축물	동수: 동, 연건축 면적: m ²
	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		
	④회원모집계획(총인원 수) 명		
	⑤체육지도자		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·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.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·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(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1부	수수료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	

작성요령

- ①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)을 적으십시오.
- ②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.
- ③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적으십시오.
- ④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를 적으십시오.
- ⑤란에는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적으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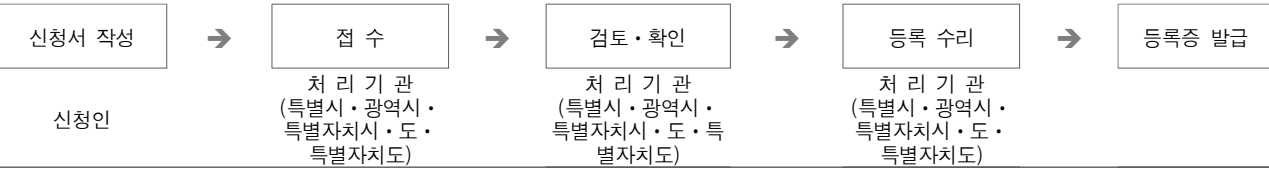
관련법규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
<등록 체육시설업의 종류>
1. 골프장업 2. 스키장업 3. 자동차 경주장업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
<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>
1. 골프장업: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 이상, 비회원제 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·편의시설·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2. 스키장업: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및 스키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·편의시설·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
유의사항

-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4항).
-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호).
-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).
-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제2호).

처리절차



시설설치 내용

1. 운동시설
가. 골프장업

코스(홀)별	길이(m)	파 수	면적(㎡)						
			계	티그라운드	페어웨이	그린	러프	장애물	기타
계									

나. 스키장업

슬로프					리프트	
슬로프명	길이(m)	평균 폭(m)	평균 경사도(%)	면적(m ²)	종류	길이(m)
					()인승	
					()인승	
					()인승	
					()인승	
					()인승	
					()인승	
					()인승	
계					계	

다. 자동차 경주장업

트랙	길이: m, 평균 폭: m
----	---

2. 안전시설

시설의 종류	규격	규모(길이·면적·개수·개소 등)

3. 편의시설

시설의 종류	규 격	규모(길이·면적·개수·개소 등)

4. 관리시설

시설의 종류	규 격	규모(길이·면적·개수·개소 등)

5. 구분등록 면적

구분	계	① 골프코스	② 주차장 및 도로	③ 조정지	④ 조경지	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	⑥ 골프장의 유지·관리를 위한 토지(보수용 잔디 재배 등)
토지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
건축물 (연면적)	계 m ²	클럽하우스: m ² , 코스 사이의 휴게소: m ² 창고: m ² , 그 밖의 건축물: m ²					

작성요령

※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.

- ① 골프코스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.
- ② 주차장 및 도로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.
- ③ 조정지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.
- ④ 조경지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.
-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.
- ⑥ 골프장의 유지·관리를 위한 토지(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)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.